

국가공간정보위원회 운영세칙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임기 및 위촉 등) ① 국가공간정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은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으로 위촉된 자에게 위촉장을 발급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위원 및 민간분야 위원이 임기내 변경될 시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이어받는 것으로 하며, 민간위원은 위원장의 위촉에 따라 연임 할 수 있다.

③ 국가공간정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

제3조(위원의 의무)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를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은 심의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, 알게 된 내용을 사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된다.

제4조(회의의 개최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,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려면 개최일부터 5일 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. 다만 긴급한 안건을 회의에 부칠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알릴 수 있다.

③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개최는 국가공간정보정책의 기본 계획 수립, 부처 간 정책조정 및 협조가 필요한 사항, 그 밖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(대면)으로 하고, 이 외에는 사안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

제5조(안건제출서식 등) ①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를 안건에 붙여 제출할 수 있다.

제6조(심의사항)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‘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정책 및 국가공간정보체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’이란 법 제19조, 제20조, 제21조, 제22조, 제32조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.

제7조(개의 및 의결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별로 가결, 부결, 조건부가결(조건 명시), 전문위원회 재검토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.

- 제8조(서면심의)** ① 위원장은 제출된 안전중 내용이 경미하거나,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
-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심의안전을 통보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에 심의를 마치고 서면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내야 한다.
-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서면심의의견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제9조(심의결과와 통보)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(최종결과)를 위원과 관련기관(부서)에 알려야 한다.

- 제10조(의견청취 및 현지조사)** ① 위원회의 안전심의 또는 전문위원회의 안전검토를 위해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② 위원회의 안전심의 또는 전문위원회의 안전검토를 위해 업무수행에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11조(회의록)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1. 회의일시 및 장소
2. 심의안전

3. 참석위원 명단

4. 심의·조정 및 검토내용

5.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간사가 다음 위원회의 회의시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2조(회의의 공개)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
다만,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.

제13조(수당 및 여비) 위원회의 회의(제10조제2항에 따른 현지 조사를 포함한다)에 참석한 민간위원 및 위원회의 요청으로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(단, 공무원은 제외)

제14조(전문위원회 구성) ① 전문위원회 운영은 법 제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무원과 공간정보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

1. 당연직: 행정안전부,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, 통계청, 산림청, 국토지리정보원

2. 위촉직: 정책·조정, DB구축·활용, 표준·기술기준, 유통·시스템·보호, 그 밖의 전문분야의 전문가

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해당 안전분야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되, 다른 분야와의 연관성 검토를 위해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 또는 위원중에서 선출하여 정할 수 있다

제15조(전문위원회 운영) ① 전문위원회는 안전제기 또는 안전의뢰를 받은 부서에서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

1.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: 매년1월 말

2. 예산확보지원을 위한 관리기관별(중앙부처·청)시행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예산: 매년 5월말

②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10일 이내에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

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안을 낸 안전에 관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의 및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④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⑤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

제16조(전문위원회의 역할) ① 전문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를 한다.

1. 법 제21조에 따른 관리기관의 표준에 대한 의견제시 및 기술기준 제정

2.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·개정내용

② 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책·조정 분야

가.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, 시행계획 및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

나. 국가공간정보정책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

다.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가공, 유통, 제공 및 체계적인 활용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

라. 공간정보의 가공, 유통 및 활용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
2. DB 구축·활용분야

가. 공간정보의 수집, 가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

나. 공간정보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

다. 기본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사항

3. 표준·기술기준 분야

공간정보 표준 제정·개정, 폐지의 필요성 검토

4. 유통·시스템·보호 분야

가.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사항

나. 공간정보의 제공형태 및 제공방법에 관한 사항

다. 공간정보의 유통, 활용의 촉진 등 지원에 관한 사항
라. 공간정보의 가공, 제공, 유통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에
관한 사항

마. 보안관리 규정 제정·개정에 관한 사항

③ 전문위원회는 제1항의 사전검토를 할 때에는 법 제3조에
따른 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
려하여야 한다.

1. 사회적 약자의 공간정보 접근 확대에 관한 사항
2. 기본공간정보 선정의 적절성 및 지속적인 생산·관리에
관한 사항
3.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규정 제정·개정 시 공간
정보 활용에 따른 사회적 이익과 공간정보 보호의 필요성
의 균형에 관한 사항

제17조(실무위원회)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다
음 각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1. 실무위원회는 위원장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전문가
로 구성한다.
2.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실무위원회 위
원 중에서 임명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3. 실무위원회 위원은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
중 일부는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실무

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그룹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전문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실무위원회의 검토 사항을 전문위원회의 검토로 보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업무 진행 상황을 전문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.

제18조(보칙) 이 세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9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국가공간정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회의개최 결과

분야 :

안 건 제 목			
안전제기기관			
안 건 상 정		회 의 개 최	
안전검토 사항(요약)		회의개최 결과(요약)	
안전검토 희 망 일		회의개최일	
안전의뢰일		안전접수일	